

1. 학칙 개정사유서 및 주요 개정내용

학칙 개정사유서
[기획부] - 우수 유학생 유치 및 대외협력 업무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처 신설
주요개정내용
[기획부] - 제14조(조직) 대학본부 내 국제협력처 신설
부서 : 기획부 담당자 : 홍성표 ① 부장 : 조민준 ①

2. 학칙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변경사유
제14조(조직) ① 본 대학교에는 교무처, 학생복지처, 기획처, 입학홍보처, 산학협력단, 사무처를 두며,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.	제14조(조직) ① 본 대학교에는 <u>교무처, 학생복지처, 기획처, 입학홍보처, 국제협력처, 산학협력단, 사무처</u> 를 두며,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.	국제협력처 신설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	
③ <u>교무처·학생복지처·기획처·입학홍보처·산학협력단</u> 에는 부처장·부단장을 둘 수 있다.	③ <u>교무처·학생복지처·기획처·입학홍보처·국제협력처·산학협력단</u> 에는 부처장·부단장을 둘 수 있다.	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	
<신설>	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24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.	